용인시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

제정 2005. 12. 31 규칙 제 500호 일부개정 2015. 6. 8 규칙 제 791호 일부개정 2021. 12. 20 규칙 제1060호(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용인시 규칙 일괄개정규칙)

- 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용인시 소속 공무원이 형사 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제도를 이용하는 사례를 방 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. 〈개정 2015. 6. 8〉
- 제2조(의원면직의 제한) 임용권자(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용인시 소속 공무원(이하 "공무원"이라한다)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제1호,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「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」 제1조의3제1호의 중징계에 해당한다고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. 〈개정 2015. 6. 8, 2021. 12. 20〉
 - 1.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
 - 2. 용인시 인사위원회(이하 "인사위원회"라 한다)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경우
 - 3. 감사원, 검찰,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 는 수사 중인 경우
 - 4.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경우
- 제3조(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)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 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5. 6. 8, 2021. 12. 20〉
- 제4조(위반자에 대한 문책) 용인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공무원이 고의

용인시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

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를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5. 6. 8〉

- 제5조(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)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5. 6. 8〉
- 제6조(위임규정)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 〈개정 2015. 6. 8〉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이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15. 6. 8 규칙 제791호〉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시행 이후 의원면직의 최초 접수된 신청 사항부터 적용한다.

부칙〈2021. 12. 20 규칙 제1060호,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용 인시 규칙 일괄개정규칙〉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